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드단205577 이혼 등

원 고 A (1973년생, 남)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1. B (1973년생, 여)

등록기준지

2. C

피고들 주소 부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 건 본 인 갑

주소

등록기준지

변 론 종 결 2017. 4. 18.

판 결 선 고 2017. 5. 2.

주 문

1.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의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
 - 나. 매년 추석 연휴 기간
 - 다.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 방학 시작일부터 7일간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위자료로 3,000만 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 B은 사건본인을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1. 7. 26.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일치하는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 B이 혼인 전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딸이 있고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원고가 혼인기간 중 알게 됨으로써 갈등을 겪은 점, 원고와 피고 B은 현재 별거 중인 점, 피고 B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B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이 혼인 전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딸이 있고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보았듯이 피고 B이 혼인 전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딸이 있고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원고가 혼인기간 중 알게 됨으로써 갈등을 겪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당사자들의 일치하는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3. 9.경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받아들이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점, 원고는 2015. 3.경 피고 B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1년 3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 B의 위 채무는 모두 혼인 전에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원고는 의사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앞에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피고 B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되었다거나 피고 C의 책임으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과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양육비

비양육친인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 B의 경제력, 직업, 재산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월 10만 원으로 정한다.

다. 면접교섭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친인 피고 B과 사건본인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데,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양육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하며,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판사 박무영